



서울고등법원

제 27 민사부

판 결



사 건 2018나2028820 공사대금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들보

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4, 지하층 에이-19호(양재동, 양재한신휴플러스)

대표자 사내이사 서현두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년

피고, 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

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(개포동)

대표자 사장 김세용

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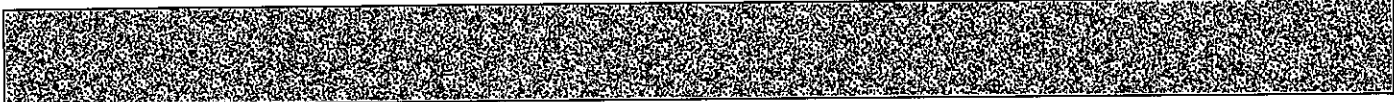
담당변호사 김경미

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가합577872 판결

변 론 종 결 2018. 8. 17.

판 결 선 고 2018. 9. 14.

주 문



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46,544,1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가. 제5면 라. 1)항 제2행 및 제11면 제16행의 "피고"를 "원고"로 각 고쳐 쓴다.

나. 제11면 마지막 행의 "원고가" 다음에 "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"를 추가한다.

다. 제12면 제7행의 "평가하여야 하고"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.

(피고의 위 주장은 충청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원고가 증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. 이 경우 원고는 충청종합건설과 연대 내지 공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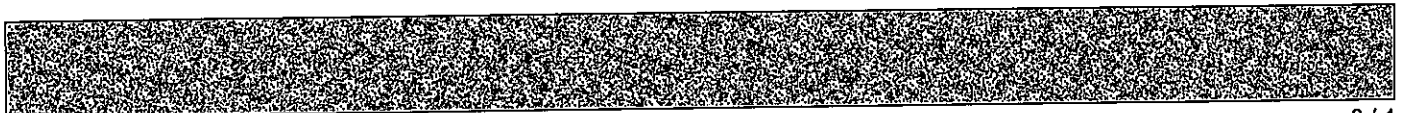


동하여 피고에게 총정종합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, 위 납부의무는 이미 총정종합건설이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멸하였다)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배형원	<u>배형원</u> 
	판사	신민석	<u>신민석</u> 
	판사	이종기	<u>이종기</u> 





정본입니다.

2018. 9. 14.

서울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김영희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서울고등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